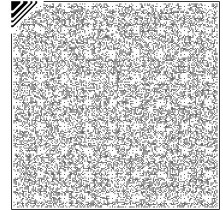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3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16호(2021.6.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31, 18532 및 18533호(2021.6.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은 1.5단계를 연장 시행**하면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개편안 1단계 적용

- 경상북도 16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0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전라남도 전 지역
- 강원도 15개 시·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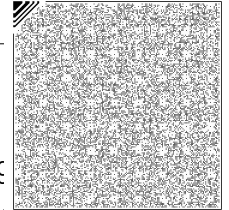
3.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 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7.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완화 불가조치 사항(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4. 이에, 각 기관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을 상세히 안내·지도하여 주시고, 다중시설 이용 시에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근무



① 수도권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② 비수도권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2) 모임·행사

① 수도권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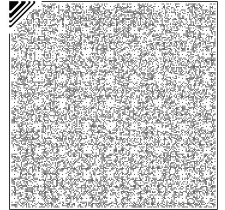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② 비수도권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붙임 1. (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식품안전상생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전북음식문화연구회, 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한국급식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집단급식조리협회, 한국커피과학회, 한국향미유통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푸드원텍(주),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교육원, (주)한국식품정보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주)세스코,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주)에프엠코리아스,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해숲식품안전솔루션,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양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식품안전정보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식육운송협회, 한국난가공업협회, 대한아이스크림협회, 한국유가공업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수입육협회, 전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대한수의사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28개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협중앙회장, 주류안전협회

주무관 **최수진** 식품위생사무관 **심연** 식품관리총괄과장 **최종동** 전결 2021. 6. 13.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4509 (2021. 6. 13.)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관리총괄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60 팩스번호 043-719-2050 / lab98sj@korea.kr / 비공개(5)

고귀한 희생, 가슴깊이 새깁니다.